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사업본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」의 시험적 실시 공고 알림

1. 관련

- 가. 우편법 시행령 제7조(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)
- 나.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(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)
- 다. 우편사업과-1074('17.6.15, 「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」 도입계획)

2. 외화현금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명칭	시행시기	공고번호	공고방법
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	'17. 11. 16. ~ '18. 12. 31.	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-105호	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(열린경영 - 공고)

붙임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- 105호. 끝.

우정사업본부장



수신자 직/청/우노/공노, 공공기관(5), 우편단 각과, 경영기획실장, 예금사업단장, 보험사업단장, 감사담당관, 준법감시담당관, 운영지원과장

주무관

정진희

행정사무관

김덕원

우편사업과장

서동

우편사업단장

전결 11/09
송관호

협조자

우편집배과장

김군현

우편정책과장

최상규

시행 우편사업과-694 (2017.11.09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 <http://www.koreapost.go.kr>
전화 [044-200-8252](tel:044-200-8252) / 전송 0505-005-1007 / hazzy8@korea.kr / 공개